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855호 , 2006. 3. 3.공포) 및「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29호, 2006. 5. 30.공포) 개정에 따라 성주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민원조정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제14호, 제1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3항제4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계획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4호 및 제1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양 위원회간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1. (현행과 같음)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	2. (현행과 같음)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4. ('96. 6. 24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2005. 3. 8 삭제)	6. (현행과 같음)	
7. (2005. 3. 8 삭제)	7. (현행과 같음)	
8. (2005. 3. 8 삭제)	8. (현행과 같음)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현행과 같음)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현행과 같음)	
12. 농촌 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13. (2005. 3. 8 삭제)	13. (현행과 같음)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에너지 절약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17.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7. (현행과 같음)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현행과 같음)	
1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2005. 3. 8 신설)	19. (현행과 같음)	
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0. (현행과 같음)	